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92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20나53750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7. 8 선고 2019가단9291 판결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경선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7.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는 별지 목록 순번 1, 2, 3, 6,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 2011. 12. 1. 접수 제1522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4,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등기소 2009. 8. 5. 접수 제858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2009. 8. 5.부터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9. 4.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은 2009. 8. 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가등기권자이다.

나.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1. 7. 27. E으로, 2011. 11. 11. F로, 2011. 11. 29. 피고 C로 가등기권자를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피고 C는 2011. 12.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명의의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4, 5,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이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마쳐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다. 한편, 피고 B은 2009. 2. 25. D에게 6,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9. 4.경 H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2009. 7.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비단3호로 ‘D이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6,3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를 위하여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가등기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B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09. 8. 5.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는 위와 같이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D과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본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위반하였거나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피고 C 명의의 본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제2부동산의 피고 B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참조).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를 상대로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4126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나5251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0. 항소심에서 일부 청구를 변경한 부분은 각하 판결을,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3159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7. 2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패소판결’이라고 한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이 사건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이 사건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8. 5.부터 위자료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진

별지

목 록

1. 동해시 I 전 2,349㎡
2. 동해시 J 전 741㎡
3. 동해시 K 임야 543㎡
4. 동해시 L 임야 6,298㎡
5. 동해시 M 임야 1,360㎡
6. 동해시 N 임야 2,975㎡
7. 동해시 O 임야 6,001㎡. 끝.